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 2024. 2.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5호, 2024. 1. 1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592

부칙 <제2024-5호,2024.1.18.>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5. 9. 7)

대주주의 요건

1. 설립인가시 대주주 요건(제10조 제1항 관련)

가.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5호나목 관련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결산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반기말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당해 법 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의 규모가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것

- 나.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나목 관련 (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개정 2013. 9.17)
 - (2)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이상일 것
 - (3)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 (4) 대주주가 (1)부터 (3)까지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것
- 다.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다목 및 제3호나목·다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법인 및 당해 법인이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다만,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 라.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 중 "제1호라목" 관련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인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서 차입자 금이 아닌 자금으로 출처가 명확할 것
- 마.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마목 (1), (3) 및 (4), 제2호·제3호라목·제4호나목·제5호마목·제6호마목 중 "제1호마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2호·제4호나목 중 "제1호라목" 및 제6호라목 관련 대주주의 출자자금은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예·적금 및 사업소득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서 차입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동 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 사.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5호가목 관련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
- 2. 법 제60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인가시 대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 요건(제11조 제1항 관련)
 - 가.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시 대주주등에 대하여는 제1호 마목 (2)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위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대주주등이 금융기관인 경우
 - (1) 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 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2) 영 제5조 제3항 별표1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 다. 대주주등이 기금등인 경우
 - (1)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2)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라목의 요건

- 라. 대주주등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 (1)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2) 영 제5조 제3항 별표1 제1호라목 및 동 별표 제3호나목 다목의 요건
- 마. 대주주등이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1) 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2)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라목의 요건
- 바. 대주주등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 (1)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2) 영 제5조 제3항 별표1 제1호라목 및 동 별표 제5호다목의 요건
- 사. 대주주등이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 (1)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2) 영 제5조 제3항 별표1 제1호라목의 요건
- 아. 대주주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 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 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구분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1-2>(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4. 2.10, 개정 2019. 1. 31)

한도조과보유주주등의 조과보유요건 (제12조제1항 관련)

- 1.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가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종자본비율이 100분의 8,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개정 2013. 9.17)
 - 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00%이상일 것(개정 2019. 1. 31)
 - 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일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 2.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제3호·제4호라목·제5호나목 중 "제1호나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 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 3.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마목(1), 제2호나목·제3호·제4호라목·제5호나목·제6호마목증 "제1호마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 4. 영 제6조의3 별표2 제4호가목·나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 5. 영 제6조의3 별표2 제6호라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상일 것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3> (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5. 9. 7, 삭제 2016. 8. 1.)

<별표1-4>(신설 2010. 3. 8, 개정 2015. 12. 29, 삭제 2016. 8. 1.)

<별표 1-5> (신설 2010. 3. 8, 삭제 2016. 8. 1.)

<별표 1-6>(신설 2010. 3. 8, 개정 2014. 12. 1)

금융지주회사등의 공동광고 및 사무공간 등 시설의 공동사용기준

(제24조 관련)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 법 제48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9항에 따라 공동광고를 하거나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시 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자료, 저장장비, 전자적 장치 및 고객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광고문안에 표시하는 등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 가. 자회사등이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인지 여부
- 나. 별도의 법적인 계약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동이 다른 자회사동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 다. 다른 관련법령에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사항
- 2. 사무공간 및 영업점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 가. <삭제> (2014. 12. 1)
- 나. 동일한 금융지주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함께 사용하는 회의실, 상담실 등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 등은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분리하고 사고 방 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다. <삭제> (2016, 7, 27)
- 라. 고객에 대하여 각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며, 각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영업점내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책임이 각 회사에만 개별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마. 각 회사가 사무공간 및 영업점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영위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 바. <삭제> (2016. 7. 27)
- 사. 고객정보의 제공이 법 제48조의2 등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사무공간 및 영업점 등을 사용하는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 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아. 공동사용하는 사무공간 및 영업점 등에서 근무하는 각 금융회사 임직원의 역할(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각 금융회사의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감독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전산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자료 저장장비, 전자적 장치를 공동사용하는 경우
- 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위한 적절한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고객정보의 제공이 법 제48조의2 등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 외에는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서로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
 - (2) 법령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서로 다른 회사가 보유한 업무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
 - (3) 전산시스템상 지휘·명령·보고라인의 분리
- 나. <삭제> (2014. 12. 1)
- 다. 관련법규 등에 따라 다른 회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에는 권한이 부여된 자의 접근가능한 정보범위, 정보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 및 위반시 불이익 조치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라.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자금융 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하여 자체 안전대책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 마.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을 공동사용하는 금융지주회사동 외의 자에게 고객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고객 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5. <삭제> (2014. 12. 1)

<별표 1-7>(신설 2011. 3. 2)

금융지주회사 인가시 사업계획 관련 심사기준

(제10조제7항 관련)

-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 4. 주력자회사(제35조제5항에 따른 주력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효율적 경영관리와 충분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할 것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 나. 요주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다. 고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 ②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 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라. 회수의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마. 추정손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조과부분
 -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 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건전성 분류의 일반원칙

(건전성분류의 원칙)

- 가. 금융지주회사는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 나.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처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 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용)

- 다. 금융지주회사는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 운영한다.
- 라. 금융지주회사는 거래처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거래처의 범위, 전체여신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마. 금융지주회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한다.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바. 동일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 ① 보증부 여신은 거래처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 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여신은 거래처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처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④ 매입외환은 지급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기 타)

- 사. 비거주자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 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 외 국정부・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 아.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종여신증 회수예상가액 조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 가. 금융지주회사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 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 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중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 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4. 회수예상가액 산정

- 가. 금융지주회사는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 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 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 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3>

<u>최소 준수비율</u> (제25조 제1항 관련)

1. 2013년 12월 1일 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 비율
3.5%	4.5%	8.0%

2.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 비율
4.0%	5.5%	8.0%

3. 2015년 1월 1일 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 비율
4.5%	6.0%	8.0%

<별표 3-2>(신설 2015.12.23.)(개정 2021.6.24.)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제1항 관련)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용완 충자본의 합

<별표 3-3>(신설 2015.12.23.)(개정 2021.6.24.)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보통주비율	4.96875 + K*3/4	5.4375 + K*3/4	5.90625 + K*3/4	6.375 + K*3/4	6.375 + K*3/4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6.9375 + K*3/4	7.40625 + K*3/4	7.875 + K*3/4	7.875 + K*3/4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K*3/4	8.9375 + K*3/4	9.40625 + K*3/4	9.875 + K*3/4	9.875 + K*3/4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K: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 자본의 합(이하 동일)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별표 3-4>(신설 2015.12.23.)(개정 2021.6.24.)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점수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제25조의2제3항 관련)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점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
600 미만	0.0%
600 이상 1400 미만	1.0%
1400 이상	2.0%

<별표 3-5>(신설 2015.12.23.) (개정 2019.5.21.)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적용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및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1.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일(이하 "영업개시일"이라 한다)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없음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5.125% + K/4	6.625% + K/4	8.625% + K/4
영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5.75% + K/2	7.25% + K/2	9.25% + K/2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7.0% + K	8.5% + K	10.5% + K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중자 본의 합(이하 동일)

- 2.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
 - 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 없음
 - 나.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단위:%)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영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단위:%)

보통주비율	4.8125 + K/2	5.125 + K/2	5.4375 + K/2	5.75 + K/2	5.75 + K/2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6.625 + K/2	6.9375 + K/2	7.25 + K/2	7.25 + K/2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8.625 + K/2	8.9375 + K/2	9.25 + K/2	9.25 + K/2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라.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단위:%)

보통주비율	4.96875 +	5.4375 +	5.90625 +	6.375 +	6.375 +
	K*3/4 미만	K*3/4 미만	K*3/4 미만	K*3/4 미만	K*3/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6.9375 +	7.40625 +	7.875 +	7.875 +
	K*3/4 미만	K*3/4 미만	K*3/4 미만	K*3/4 미만	K*3/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8.9375 +	9.40625 +	9.875 +	9.875 +
	K*3/4 미만	K*3/4 미만	K*3/4 미만	K*3/4 미만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마.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단위:%)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7.25 + K	7.875 + K	8.5 + K	8.5 + K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9.25 + K	9.875 + K	10.5 + K	10.5 + K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별표 4〉 〈신설 2021.6.24〉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

(제25조의5 관련)

- 1.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 가.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지속적인 관리 및 실행 등과 관련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책임과 역할을 포함 해야 한다.
- 나.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지표(이하 '발동지표'라고 한다.)에 관한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발동지 표별로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 다.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하 '자체정상화수단'이라 한다.)의 발통 여부, 실행할 자체정상화수단의 결정 및 신속한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등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 2.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경영 위기상황의 발생 시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지·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능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 족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핵심기능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그룹 내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는 기능 인 경우
- 2) 상기 기능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제3자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부실이 파급되거나 시장의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구조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매출, 이익 또는 영업권 등의 주요 원천이 되는 사업을 은행지주회사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3.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 가.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는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 나.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금융기관의 고유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자체정상화수단의 효과분석 등에는 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 발동지표는 자체정상화수단에 대한 발동시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정량적 지표 및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구조와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동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 2) 발동지표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및 위기상황 등과 관련하여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다.
- 라. 자체정상화계획 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발동지표의 기준(이하'발동요건'이라 한다.)은 다음을 만 족해야 한다.
- 지표별 발동요건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와 감독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한다.
- 2) 자본적정성 발동지표의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규제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한다.
- 3) 유동성 발동지표의 경우 제25조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비율 및 자회사가 속한 업권의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 4) 발동요건 충족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수단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자본적정성 등 일부 발동기표의 경우 발동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치수단을 즉시 실행토록 정하는 등 급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4.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
- 가.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활용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자체정상화수단의 목록을 제시하고, 자체정상화수 단의 집행에 따른 자본적정성 등 경영 건전성 개선 효과, 집행 절차 및 소요기간과 예상 장애요인, 집행 책임자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나. 자체정상화수단 집행에 따른 효과 분석 시에는 위기상황이란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 효과분석에 필요 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 다. 가능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증자 등 자본 확충 조치, 배당금지 및 임직원 성과 보상지급의 금지 등
- 2) 자회사의 매각, 사업부 분할
- 3)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발적인 채무조정
- 4) 자금조달 방식 다변화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 등(은행지주회사 내 유동성 및 자산의 이전 등을 포함)
- 5.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영업지속 계획
- 가. 경영 위기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인력·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지배구조의.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적합성을 점검·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나. 경영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시장의 인프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 다. 내부 업무 절차, 정보기술, 청산 및 지급결제 시스템, 공급 및 직원과의 계약 등이 경영 위기상황에도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6.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
- 가.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발동요건 충족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 언론, 금융시장, 내부 직원 및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 자체정상화계획과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7. 경영정보시스템 등 구축 등
- 가. 자체정상화계획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임원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나. 경영정보시스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